

변화를 선도하는 강남
희망을 선사하는 강남



2016년 강남구 재정공시(예산)



강 남 구

2016년 강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

2016. 2.

강남구청장(인)

- ◆ 우리 구의 '16년도 살림규모(세입예산)는 6,685억원(기금별도)으로, 전년 예산대비 41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.
 -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 자체수입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은 4,142억원, 의존재원(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)은 2,210억원, 지방채·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3억원입니다.
- ◆ 우리 구의 '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'재정자립도'는 59.9%이며,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'재정자주도'는 61.3%입니다. 이는 '11년도에 비하여 각각 22.9%, 23.1% 떨어진 수치입니다.
- ◆ 우리 구는 2008년 이후 시행된 '재산세 공동과세'로 인하여 매년 1,300억원의 예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1인당 세입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세출예산은 1,093천원으로 1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
- ◆ 이에, 강남구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세원 발굴, 체납징수 강화, 국·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욱 힘써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◎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gangnam.go.kr>)에서 보실 수 있으며,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자 : 기획예산과 연은정(02-3423-5473)

1 공통공시 총괄

☐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재정운영 결과		강남구			유사단체 평균		
		'16년도 (A)	'15년도 (B)	증감 (C=A-B)	'16년도 (A)	'15년도 (B)	증감 (C=A-B)
예산규모	세 입 예 산	9,168	8,702	466	6,083	5,649	434
	세 출 예 산	9,168	8,702	466	6,083	5,649	434
	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재정여건	재정자립도[당초]	65.05 (59.97)	66.22 (59.96)	△1.17	36.73 (32.93)	36.6 (32.67)	0.13
	재정자주도[당초]	66.36 (61.28)	67.64 (61.37)	△1.28	55.37 (51.57)	54.87 (50.94)	0.5
	통합재정수지[당초]	19	-2	21	3	-4	7
재정운영계획	성 인 지 예 산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주 민 참 여 예 산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성 과 계 획 서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
▶ 유사단체 : 기초자치단체 시-1~4, 군-1~4, 구-1~4 총 12개 유형중 강남구는 자치구-1에 해당 (서울 성북구, 노원구, 은평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영등포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)

※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()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, 이월금, 전입금, 예탁·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

2 예산규모

2-1. 세입예산

-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. 2016년도 강남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세입예산 총계	일반회계	공기업 특별회계	기타 특별회계	기금
916,818	630,362	0	38,223	248,233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연도별 세입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2012	2013	2014	2015	2016
788,575	785,483	812,548	870,244	916,818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입재원	2012		2013		2014		2015		2016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
합 계	504,426	100%	503,807	100%	537,437	100%	590,594	100%	630,362	100%
지방세	262,599	52.06%	259,908	51.59%	249,714	46.46%	256,726	43.47%	272,526	43.23%
세외수입	143,512	28.45%	122,328	24.28%	95,953	17.85%	97,372	16.49%	105,517	16.74%
지방교부세	5,000	0.99%	5,000	0.99%	5,000	0.93%	5,373	0.91%	5,240	0.83%
조정교부금 등	3,384	0.67%	3,111	0.62%	3,650	0.68%	3,000	0.51%	3,000	0.48%
보조금	89,930	17.83%	113,461	22.52%	151,120	28.12%	191,122	32.36%	212,079	33.64%
지방채	0	0.00%	0	0.00%	0	0.00%	0	0.00%	0	0.00%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0	0.00%	0	0.00%	32,000	5.95%	37,000	6.26%	32,000	5.08%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2-2. 세출예산

- 1년 동안 강남구에서 사회복지, 보건, 문화관광,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세출 총계	일반회계	공기업 특별회계	기타 특별회계	기금
916,818	630,362	0	38,223	248,233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12	2013	2014	2015	2016
788,575	785,483	812,548	870,244	916,818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분야	2012		2013		2014		2015		2016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
합 계	504,426	100%	503,807	100%	537,437	100%	590,594	100%	630,362	100%
일 반 공 공 행 정	66,295	13.14%	49,012	9.73%	50,556	9.41%	50,626	8.57%	49,262	7.81%
공공질서 및 안전	16,124	3.20%	15,482	3.07%	14,690	2.73%	16,740	2.83%	18,329	2.91%
교 육	27,440	5.44%	26,748	5.31%	24,660	4.59%	22,801	3.86%	24,186	3.84%
문 화 및 관 광	15,053	2.98%	16,410	3.26%	15,901	2.96%	16,524	2.80%	18,520	2.94%
환 경 보 호	47,128	9.34%	42,935	8.52%	37,246	6.93%	40,535	6.86%	51,676	8.20%
사 회 복 지	167,512	33.21%	185,742	36.87%	222,601	41.42%	260,561	44.12%	275,842	43.76%
보 건	10,994	2.18%	16,484	3.27%	14,944	2.78%	16,200	2.74%	17,450	2.77%
농 립 해 양 수 산	517	0.10%	610	0.12%	578	0.11%	474	0.08%	533	0.08%
산 업 · 중 소 기 업	3,023	0.60%	2,546	0.51%	2,554	0.48%	3,496	0.59%	2,006	0.32%
수 송 및 교 통	11,256	2.23%	12,725	2.53%	10,020	1.86%	9,734	1.65%	11,360	1.80%
국 토 및 지 역 개 발	18,652	3.70%	16,921	3.36%	16,874	3.14%	15,021	2.54%	20,902	3.32%
예 비 비	6,320	1.25%	5,341	1.06%	5,142	0.96%	8,180	1.39%	10,068	1.60%
기 타	114,111	22.62%	112,851	22.40%	121,672	22.64%	129,702	21.96%	130,228	20.66%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2-3. 중기지방재정계획

▣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❖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935,079	958,327	970,075	989,503	1,014,185	4,867,169	2.10%
자 체 수 입	440,695	444,576	448,142	451,658	455,567	2,240,638	0.80%
의 존 수 입	223,197	238,881	242,897	255,991	272,596	1,233,562	5.10%
지 방 채	0	0	0	0	0	0	0.00%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271,188	274,870	279,036	281,853	286,022	1,392,969	1.30%
세 출	935,079	958,327	970,075	989,503	1,014,185	4,867,169	2.10%
경 상 지 출	392,745	397,951	403,578	407,618	413,688	2,015,580	1.30%
사 업 수 요	542,334	560,376	566,496	581,885	600,497	2,851,588	2.60%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▶ 연평균 증가율 = $[(\text{최종연도}/\text{기준년도})^{1/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 - 1] \times 100$

2-4. 지역통합재정통계

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 포함), 기금,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.

다음은 강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 A)	비율 (B-A)/A
합 계	913,804	959,821	46,017	5.04%
강남구	870,244	916,818	46,574	5.35%
공사·공단	21,755	21,211	△544	△2.50%
출자·출연기관	21,805	21,792	△13	△0.06%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- ▶ 공사·공단(1개) : 강남구 도시관리공단
- ▶ 출자출연기관(2개) : 강남 복지재단, 강남 문화재단

3 재정여건

3-1. 재정자립도[당초]

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재정자립도가 100%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. 2016년도 강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9.9%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재정자립도 (B/A)	세입 합계 (A=B+C+D+E)	자체세입 (B)	의존재원 (C)	지방채 (D)	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(E)
65.05% (59.97%)	630,362 (630,362)	410,043 (378,043)	220,319	0	0 (32,0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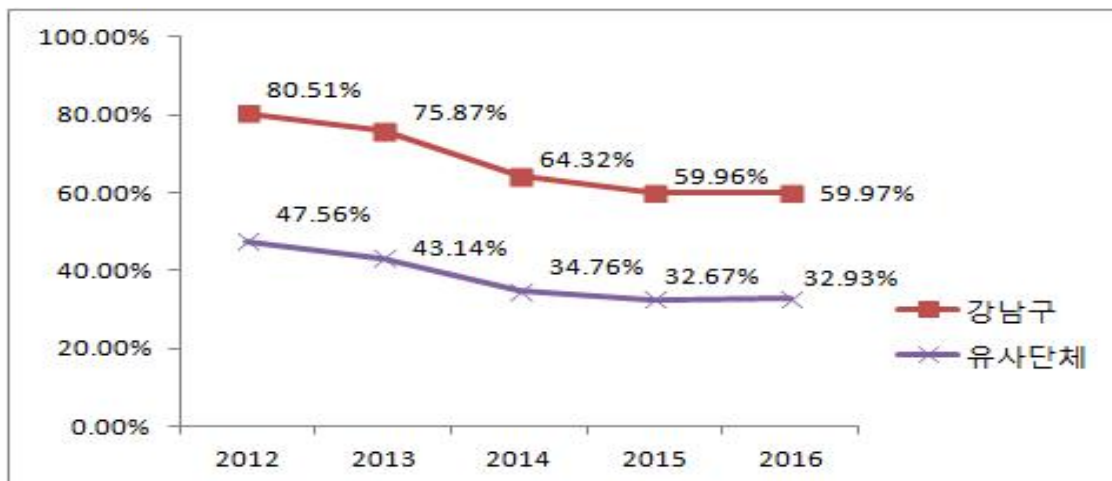
- ▶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, ()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, 이월금, 전입금, 예탁·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.
- ▶ 자체세입 : 지방세(지방교육세 제외) + 세외수입
- ▶ 의존재원 : 지방교부세 + 조정교부금 등 + 보조금

❖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%)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
당초예산	80.51%	75.87%	70.27% (64.32%)	66.22% (59.96%)	65.05% (59.97%)
최종예산	77.20%	71.86%	67.74% (56.9%)	64.51% (56.1%)	-

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



유사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음

3-2. 재정자주도[당초]

☐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. 재정자주도가 100%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강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.2%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재정자주도 (B/A)	세입 합계 (A=B+C+D+E)	자주재원 (B)	보조금 (C)	지방채 (D)	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(E)
66.36% (61.28%)	630,362 (630,362)	418,283 (386,283)	212,079	0	0 (32,0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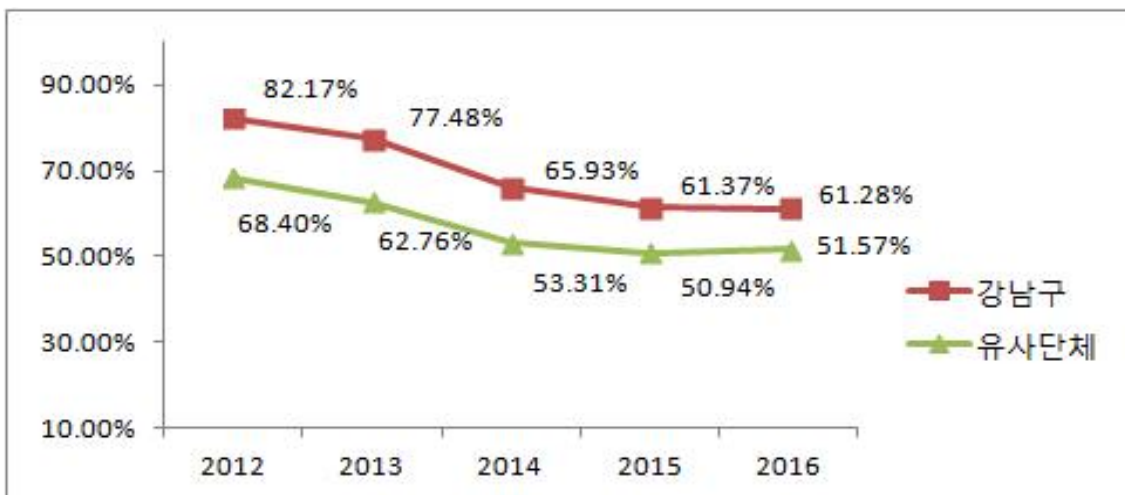
- ▶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, ()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, 이월금, 전입금, 예탁·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.
- ▶ 자주재원 : 자체세입 + 지방교부세 + 조정교부금 등

❖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%)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
당초예산	82.17%	77.48%	71.88% (65.93%)	67.64% (61.37%)	66.36% (61.28%)
최종예산	78.95%	73.97%	69.51% (58.66%)	66.27% (57.86%)	-

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



☞ 유사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이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하락하고 있음

3-3. 통합재정수지

☐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,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. 다음은 2016년 강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별	통계 규모						통합재정 규모 (G=B+E)	통합재정 수지 1 H=A-(B+E)	통합재정 수지 2 I=A-(B+E) +F
	세입 (A)	지출 (B)	융자 회수 (C)	융자 지출 (D)	순융자 (E=D-C)	순세계 잉여금 (F)			
총 계	647,473	677,833	9,573	10,722	1,149	33,394	678,982	-31,510	1,885
일반회계	598,362	627,721	0	0	0	32,000	627,721	-29,359	2,641
기타 특별회계	36,829	38,221	0	2	2	1,394	38,223	-1,395	0
기 금	12,282	11,891	9,573	10,720	1,147	0	13,038	-756	-756

- ▶ 당초예산 총계 기준
- ▶ 통합재정규모 = 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) + 순융자(융자지출-융자회수)
- ▶ 통합재정수지 1 = 세입 - (지출 + 순융자)
- ▶ 통합재정수지 2 = 세입 - (지출 + 순융자) + 순세계잉여금

❖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
통합재정수지 1	-76,311	-28,954	-36,410	-38,567	-31,510
통합재정수지 2	254	7,720	1,445	-190	1,885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강남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42	37,350
여성정책추진사업	17	9,512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24	27,489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1	349

- 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.

http://www.gangnam.go.kr/portal/bbs/selectBoardList.do?bbsId=B_000742&menuNo=201204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강남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630,362	821	3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❖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	821	
1	자치행정과	바람개비 태극기 상시 게양	5	신규사업
2	공원녹지과	개포동 13-5번지내 환경정비 사업	253	"
3	공원녹지과	늘벗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	200	"
4	노인복지과	돌봄 사각지대 소외계층 어르신 예방적 맞춤형 교육	5	"
5	보육지원과	생애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	36	"
6	보육지원과	찾아가는 성폭력,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	24	"
7	자치행정과	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등지교실 운영	8	계속사업
8	복지정책과	일원나눔한마당	20	신규사업
9	도로관리과	대모산입구역~대청역주변 노후보도 정비	250	"
10	공원녹지과	수서역사거리 꽃길 조성	20	"

4-3. 성과계획서

- ▣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▣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강남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10	63	175	166	668,585	627,167	41,419
공 보 실	1	1	3	3	2,334	2,286	48
감 사 담 당 관	1	1	2	3	439	458	-18
도 시 선 진 화 담 당 관	1	2	7	3	1,134	582	552
기 획 경 제 국	1	12	27	27	26,575	26,911	-336
복 지 문 화 국	1	12	28	36	344,790	315,095	29,696
도 시 환 경 국	1	9	25	21	22,398	17,978	4,420
안 전 교 통 국	1	10	31	27	71,260	64,629	6,631
행 정 국	1	9	25	29	168,103	168,988	-885
보 건 소	1	6	24	14	26,875	25,554	1,321
구의회사무국	1	1	3	3	4,677	4,687	-10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65.05 (59.97)	66.36 (61.28)	43.76	30.42	48.5	24.67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- ▶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(2014년 이전) 기준, ()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, 이월금, 전입금, 예탁·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.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78	78	0
	부단체장	56	56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1640	890	△75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동경비	112	112	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103	103	0
	의원국외여비	68	68	0
지방보조금		14,081	9,816	△4,265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2,988	2,788	△20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-	3,224	-
공무원 일·숙직비		227	227	0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.go.kr>)
- ☞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(6개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, 사회복지사업 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)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: 해당 없음

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
※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(특·광역시에 합산반영)

4-7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: 해당 없음

4-8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: 해당 없음

